



## 전·현직 정부 공무원 및 그 관련자의 고용 및 선임

---

- A. [요약](#)
- B. [적용 대상](#)
- C. [정의](#)
- D. [규정](#)
- E. [절차](#)

[첨부 1: 정의](#)

[첨부 2: 절차 및 요건](#)

[별첨 1: 미국 연방정부 “회전문” 법규 요약](#)

[별첨 2: 미국 연방정부 “회전문” 설문지](#)

[별첨 3: 미국 연방정부 “회전문” 참조 서한](#)

## A. 요약

이 문서는 전·현직 정부 공무원 및 그 관련자의 직원 또는 공급자의 고용 또는 선임은 부패방지법, 회전문(revolving door)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에 관한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의 논의 및 제안이다. 이들 법규의 목적은 그러한 공무원들이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들 법규를 위반할 경우, 정부 공무원 및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은 형사 및 민사 제재, 자격정지 등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B. 적용 대상

본 규정은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및 그 사업 단위, 자회사, 본부, 그 밖에 지배 하의 사업 법인 및 업체(“운영 단위”), 전 세계의 법인장, 관리자, 직원(“UTC”로 통칭)에 적용된다. 본 규정은 CPM 10: 미국 정부 전·현직 공무원 고용을 대체한다.

## C. 정의

“회사”(Corporate)란 본사를 의미하며 “사업 단위”(Business Unit) 또는 “BU”란 Otis Elevator Company, Pratt & Whitney, UTC Aerospace Systems, UTC Climate, Controls & Security, United Technologies Research Center 를 의미한다. 굵은 글씨로 된 용어는 첨부 1에 정의되어 있다.

## D. 정책

- 적용 가능한 고용, 노무, 프라이버시 법에 따라, 운영 단위는 UTC 직원 채용 신청자나 개인 서비스 공급자 신청자가 전·현직 정부 공무원 또는 현직 정부 공무원의 관련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들 신청자들을 선별하여야 한다.
- 현직 정부 공무원 또는 현직 정부 공무원의 관련자에게는 UTC 직원 또는 개인 서비스 공급자로 채용 제의를 하지 말아야 하며, 그렇게 할 경우 이는 부정 금품에 해당하거나 부정 금품을 간주될 수 있다.
- 운영 단위는 현직 미국 연방정부 직원과 UTC 직원 또는 개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채용 가능성을 논의하기 전에 첨부 2에 따라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운영 단위는 현직 정부 공무원, 현직 정부 공무원의 관련자, 특정 전직 정부 공무원에게 UTC 직원 또는 개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채용 제안을 하기 전에 첨부 2에 따라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 본 정책에 따라 부패방지 및 회전문 선별을 수행하는 대신에, 운영 단위는 개인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서비스 공급자로부터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 및 회전문 법규의 준수 여부에 관한 표명과 보증을 받아야 한다(CPM 17: 서비스 공급자, CPM 48D: 로비스트, CPM 48E: 배급자 및 비직원 판매 대리인 참조).

## E. 절차

첨부 2를 참조한다.

## 첨부 1: 정의

**계열사 (Affiliate)**란 다음을 의미한다.

- 언급된 **단체**에 대하여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체
- 언급된 **단체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체
- 언급된 **단체와** 함께 또다른 **단체**의 공동 지배 하에 있는 단체

**컨설턴트**는 **CPM 17: 서비스 공급자**에 정의되어 있다.

**지배력(Control)**이란 다음을 행하는 직간접적인 권력을 의미한다.

- 어느 단체의 운영 조직 구성원을 임명할 수 있는 의결권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주식 중 50%를 초과한 수의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
- 의결권을 보유한 지분의 소유나 계약, 기타 방식을 통하여, **단체**의 일상적인 경영 의사결정과 규장을 지시하거나 지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정 금품(Corrupt Payment)**은 **CPM 48: 부패방지**에 정의되어 있다.

**배급자(Distributor)**는 **CPM 48E: 배급자 및 비직원 판매 대리인**에 정의되어 있다.

**채용(Employment)**이란 개인을 다음으로서 고용하거나 선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UTC** 직원(보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특히 전일직(full-time), 시간직(part-time), 임시직(temporary), 임차직(leased employee), 인턴(intern) 등을 포함)
- **공급자**(특히, **컨설턴트, 배급자, 로비스트, 비직원 판매 대리인(미국 정부 마케팅 또는 미국 정부 판매 공급자 포함)** 또는 기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공급자**의 다음과 같은 직원 또는 수급자
  - **UTC**의 요청에 따라 **공급자**가 고용하거나 선임하는 자
  - **UTC**의 사업 또는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할 자

**단체(Entity)**란 영리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회사,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십, 개인사업자, 신탁회사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 그 밖의 조직을 의미한다.

**정부 항공 당국(Government Aviation Authority, GAA)**은 **CPM 48B: 제 3 자 여행 후원**에 정의되어 있다.

**정부(Government)**란 다음 중 하나를 지칭한다.

- 미국 및 미국 이외의 정부로서, 국가, 지역, 지방 또는 도시 정부가 모두 포함된다.

- **정부 항공 당국(GAA)**
-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 정부를 대신하여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행동하는 **단체**
- 정부가 소유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
- 정부가 **지배력**을 행사하는 **단체**, 회사, 사업
- 정당
- 공공 국제기구(예, 국제연합(UN),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 또는
- 상기 조직의 부서, 기관, 산하 부문, 대행기관

**고위 미국 연방정부 직원(High-Level U.S. Federal Government Employee)**은 다음과 같은 직위를 역임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미국 정부 직원**을 의미한다.

- 장성급 장교(O-7 이상)
- 정무직(급여수준 불문)
- 그 밖의 고위직 공무원(정무직 또는 직업 고위공무원단(SES) 공무원 포함)으로서 급여가 공무원급여표(Executive Schedule)<sup>1</sup>의 V-I 에 상당한 자

**개인 서비스 공급자(Individual Service Vendor)**란 제안 또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지배력을 한 개인이 행사하거나 공급하는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한다(예, 개인사업자 또는 1인 회사,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쉽, 또는 그와 유사한 단체).

**로비스트**는 CPM 48D: 로비스트에 정의되어 있다.

**비직원 판매 대리인(Non-Employee Sales Representative)** 또는 **NSR**은 CPM 48E: 배급자 및 비직원 판매 대리인에 정의되어 있다.

**관련자(Related Party)**란 다음을 뜻한다.

- 개인의 경우, 개인의 직계 가족 또는 확대가족 구성원으로서 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삼촌, 삼촌의 배우자, 조카, 조카딸 등이 포함 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단체인 경우, 법인의 계열사**

**서비스(Service)**는 CPM 17: 서비스 공급자에 정의되어 있다.

**제 3 자(Third Party)**란 다음을 뜻한다.

- **개인의 경우, UTC 또는 어떤 UTC의 계열사의 직원도 아닌 모든 개인**

<sup>1</sup> 미국 인사국(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은 급여표를 발행하고 있다. 2013~14 회계연도 공무원급여표 상의 급여는 5급의 미화 147,200 달러에서 1급의 미화 201,700 달러 범위에 걸쳐 있다. 대통령은 2014년에 이 금액을 조정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 법인의 경우, UTC 또는 UTC의 계열사가 아닌 모든 법인(본 사규의 목적 상, UTC 합작투자 파트너와 공급자, 그들의 해당 계열사들은 제 3자로 정한다)

미국 연방정부 직원(U.S. Federal Government Employee)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 미국 연방정부 군대에 등재된 사병
- 미국 연방정부 군대의 장교
-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부 또는 입법부 공무원 또는 직원(선출직 또는 임명직, 전일제 또는 시간제, 급료 지급여부 불문)으로서 특히 다음이 포함 되나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 특별 정부 직원
  - 연방 자문위원회 위원
  - 의회의 선출직 공무원
  - 전·현직 의회 의원
  - 의회 의원의 개인 보좌관
  - 의회 위원회의 직원
  - 특히 다음의 입법부 소속 사무실 직원
    - 의회 예산국
    - 회계감사원
    - 기술평가국

그러나 사무직원, 비서, 그 외 유사 등급의 직원은 제외된다.

미국 정부 대상 마케팅(U.S. Government Marketing)은 CPM 48E: 배급자 및 비직원 판매 대리인에 정의되어 있다.

미국 정부 대상 판매(U.S. Government Sales)는 CPM 48E: 배급자 및 비직원 판매 대리인에 정의되어 있다.

공급자(Vendor)란 UTC에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또는 향후의 제 3자 수급자 또는 제공자를 의미한다.

## 철부 2: 절차 및 요건

### A. 부패방지 법규 준수

1. 부패방지 법규는 **채용**을 제안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렇게 할 경우 부정 금품 제안에 해당된다.
2. **채용** 제안을 하기 전에 **운영 단위**는 선별과정을 통하여 현직 **정부 공무원** 또는 현직 **정부 공무원의 관련자**로 확인된 신청자를 UTC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개인 서비스 공급자**로 선임하기 위하여 법률 고문에게 알려야 한다.
3. 법률 고문은 지원자와 제안된 **채용** 상황을 검토하고, 서면으로 해당 **운영 단위**가 제안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언하여야 한다. 만약 제안, 고용, 또는 유지가 부정 금품 제안에 해당하거나 외견상 그러할 경우, **운영 단위**는 진행을 중단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상 합의는 완전히 금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 단위**는 UTC 제품 또는 서비스의 판매에 입찰하거나, 인센티브 또는 그 밖의 규제 행위(예, 허가, 승인, 등) 또는 유예(forbearance)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거나, 제안된 제의·고용·유지 12 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할 경우, 그러한 각각의 행위에 대하여 지원자 또는 지원자의 **관련자**가 자문 또는 의사결정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시적·공식적으로 기피(recuse)하지 아니한 경우, 그러한 채용 제의에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만약 입찰 또는 신청 일자가 불확정(즉, 12 개월 이상)된 상태거나 **운영 단위**가 아닌 **BU**가 현재 또는 향후 입찰을 제출하거나 신청서에 해당 지원자를 고용하거나 유지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경우, 해당 지원자를 고려할 수 있다. 단, 해당 지원자는 (a) 제안된 직위에 적용되는 지원 절차를 완료하였으며<sup>2</sup>, (b) 제안된 직위에 대하여 기재된 최저 요건(예, 학력, 경력, 기술, 지식 등)을 충족시키거나 합격하였으며<sup>3</sup>, (c) 면접을 마쳤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4. 회전문 법 또는 그와 유사한 규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거나 그렇게 간주되는 현직 또는 특정 전직 **미국 연방정부 직원**, 또는 전·현직 미국 주(州)-지방 및 미국 이외 **정부 공무원**으로 확인된 지원자는 아래 제 B 조 및 제 C 조에 따라 추가적인 승인을 받아야 한다.

### B. 미국 연방정부의 회전문 요건 준수

1. 미국 연방정부 법규(**별첨 1** 참조)에서는 특정 전·현직 **미국 연방정부 직원**의 **채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사전적 논의조차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소위 “회전문”(revolving door) 제한을 둔 목적은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부적절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 직원** 및 고용 또는 선임 업체가 형사상 및 민사상 제재, 자격정지를 포함한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sup>2</sup> 인턴십의 경우, 지원자를 고용하는 운영 단위는 인턴십 또는 고용 프로그램을 이미 수립하였어야 한다.

<sup>3</sup> 인턴십 지원자는 수립된 인턴십 프로그램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전체 평균 B 또는 지원자의 전공 분야에서 평균 B를 받았고, UTC 사업에 관련된 분야에 관심이 있음을 보였어야 한다(예, 엔지니어링, 기술, 판매, 경영관리, 또는 UTC의 지원 기능 중 하나).

2. 지원자와 논의를 시작하고 수속을 추가로 진행하기 전에, **운영 단위**는 선별과정을 통하여 전·현직 **미국 연방정부 직원**으로 확인된 신청자를 **UTC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개인 서비스 공급자**로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자에 대한 회전문법 관련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지정된 인사부(Human Resource) 관리자(**UTC 직원** 예정자인 경우) 또는 구매 조직(**개인 서비스 공급자** 예정자인 경우)은 신청자에게(또는 해당되는 경우 지원자의 서치폼)에게 **별첨 2**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서한 및 설문지를 제공하고, 서한과 기재가 완료된 설문지의 사본을 법률 고문·지정 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률 고문·지정 담당관은 기재된 설문지(및 모든 작성된 의견)<sup>4</sup>을 검토하고 서면으로(필요에 따라 한 단계 또는 몇 단계를 거쳐), **운영 단위**가 채용 가능성을 논의하고 지원자에게 **채용** 제의를 할 수 있는지, 어떠한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조언하여야 한다. 법조문이 특정 직급의 공무원과 직원에게만 적용되며, 심지어 전직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3~5 년 검토 기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잠재적 직원 또는 **개인 서비스 공급자**가 평생 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 확인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 고문·지정 담당관은 **미국 연방정부 직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한의 성격과 지속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별첨 1** 참조). 마지막으로, “회전문” 규제 이외에도, 수정 「연방조달정책실법」(the Office of Federal Procurement Policy Act)과 「미합중국법」 제 41 편제 423 조에서는 전·현직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미국 연방정부와 경쟁 입찰자들의 특정 조달 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설문지를 검토할 때 **UTC 조달윤리절차(Procurement Integrity procedure)**를 참조함으로써, 고용·선임 과정 중 또는 전직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UTC 직원** 또는 **개인 서비스 공급자**로서 회사와 함께 한 기간 중에, 당사자가 불법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거나, 스스로 공개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운영 단위**는 수속을 진행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행위	미국 연방정부 직원의 유형·상태	필요한 서면 확인서
사전 논의	모든 전직 미국 연방정부 직원	없음
	모든 현직 미국 연방정부 직원	운영 단위의 법률 고문
의	1. 전직 직원, 조달 책임이 없는 인원으로 등재된 직원	없음

<sup>4</sup> 내부 UTC 수속 이외에도, 「미국공법」(Public Law) 제 847 절제 110-181 조(2008 년 1 월 28 일)에서는 일부 전직 국방부 공무원이 직무를 떠난지 2 년 이내에 DOD 수급자로부터 급료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직 후 제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서면 의견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법률은 다음과 같은 모든 공무원 및 전직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1) 「연방조달정책실법」 제 4 조제(16)항에 정의된 가액 미화 10,000,000 달러를 초과하는 획득 사업에 개인적으로 및 본질적으로 참여하였거나, 「미합중국법」 제 5 편제 53 장제 II 절에 따른 공무원급여표의 직위에 재직 중 또는 과거 재직하였거나 「미합중국법」 제 5 편제 53 장제 VIII 절에 따른 고위직(Senior Executive Service)에 재직하였거나, 「미합중국법」 제 37 편제 201 절에 따른 O-7 이상의 직급에 대한 급료를 수령하는 장군 또는 장성급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2) 가액 미화 10,0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의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그램 부매니저, 조달 계약 공무원, 계약행정 관련 공무원, 공급처 선정 당국, 공급처 선정 평가 위원회 위원, 재무 또는 기술평가팀장으로 재직 중 또는 재직 한 자. 수급자는 전직 공무원이 그러한 서면 의견을 요청하고 수령하였음을 최초로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위에) 기술된 전직 국방부 공무원에게 보수를 고의로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09 년 1 월 15 일자로 국방획득규제위원회(DARC)는 법의 영향을 받는 수급자들이 금지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연방획득규정 보충규정(DFARS)제 252.203-7000 호에 “전직 국방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요건”을 추가함으로써 제 847 조를 이행하였다. 의견 요청은 전직 국방부 직원이 대리기구(agency)를 통하여 개시하여야 한다.

	2. 전직 직원, 조달 책임이 있는 직원으로 등재되었으며, 직무종료 일자로부터 3 년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없음
	3. 전직 직원, 1, 2 또는 고위 미국 연방정부 직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직무종료 일자 이후로 3 년 이하의 기간이 지난 경우	운영 단위 법률 고문·지정 담당관
	4. 전직 직원, 고위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었으며, 직무종료 일자로부터 5 년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운영 단위 법률 고문·지정 담당관
	5. 전직 직원, 고위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었으며, 직무종료 일자 이후로 5 년 이하의 기간이 지난 경우	운영 단위 법률 고문 및 UTC 글로벌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부사장(CVP GEC)
	6. 현직 직원, 고위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아닌 경우	운영 단위 법률 고문
	7. 현직 직원, 고위 미국 연방정부 직원인 경우	운영 단위 법률 고문 및 UTC 글로벌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부사장(CVP GEC)

6. 미국 연방정부 직원에 대한 채용 제의 승인은 UTC에서 수행할 업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사부는 최근 3년 이내에 미국 연방정부에서 이직한 UTC 직원들(또는 자신의 직책 내에 있을 수 있는 특정 사안에 대한 평생 제한에 해당될 수 있는 직원들)에게 직책이 변화함에 따라 직무내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주기적으로 상기시킬 것이다. 양식과 내용 면에서 **별첨 3**과 유사한 확인서를 해당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 UTC에 고용될 일자 이전에 보내야 한다.

### C. 미국 주(州) 및 지방 정부, 미국 이외 정부의 회전문 요건 준수

1. 미국 주(州) 및 지방, 미국 이외 외국 정부에는 미국 연방정부의 회전문 법과 유사한 법규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정부의 전·현직 정부 공무원을 UTC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개인 서비스 공급자로 유지하고자 하는 운영 단위는 금지나 제한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법률 고문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지원자 선별과정을 통하여 전·현직 미국 주(州) 및 지방, 미국 이외 정부 공무원으로 확인되었거나 회전문 법 또는 관련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운영 단위는 그러한 지원자를 UTC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개인 서비스 공급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위의 제 B조에 상당한 절차와 승인에 따라 수속을 진행하여야 한다(적용 가능한 요건에 맞도록 수정한 **별첨 2**와 **별첨 3**의 사용도 포함).

### D. 서류 보관



**운영 단위**는 위의 제 A 조~제 C 조에 따라 수행하고 제공된 검토문과 확인서에 관련된 모든 확인서와 소통내용(특히, 고용 이후 인사부 또는 이를 인지하고 있는 구매 관리자의 서한 등)을 직원의 개인 파일(채용할 UTC 직원인 경우) 또는 계약 파일(계약할 **개인 서비스 공급자**인 경우)에 보관하여야 한다.

**별첨 1: 미국 연방정부 “회전문” 규칙 및 규정 요약****I. 미국 의회 – 전직 의원, 관리, 직원**

- A. 전직 상원의원은 직위를 떠난 후 2년 동안, 타인을 대리하여 공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하원 또는 상원, 또는 모든 입법부 소속 사무실의 의원, 관리, 직원과 소통하거나 대면할 수 없다<sup>5</sup>.
- B. 상원의 “고위 직원”<sup>6</sup>은 직위를 떠난 후 1년 동안, 타인을 대리하여 공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어떠한 상원의원 또는 의원실 직원과도 소통하거나 대면할 수 없다. 그 외 상원의원실 직원은 직무를 떠난 후 1년 동안 타인을 대리하여 공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자신의 재직 당시 상원의원 또는 의원실 직원과 소통이나 대면하는 것이 금지된다<sup>7</sup>.
- C. 하원의원은 직위를 떠난 후 1년 동안, 타인을 대리하여 공적 행위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상원 및 하원, 모든 입법부 소속 사무실의 의원, 관리, 직원과 소통하거나 대면할 수 없다.
- D. 상원의원 및 하원 의원은 협상을 개시한 후 3 업무일 이내에 하원 공적행위기준위원회 또는 상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통지하지 아니한 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미래의 개인적 채용에 관한 협상이 금지된다<sup>8</sup>.
- E. “고위” 상원 및 하원 직원<sup>9</sup>은 미래의 개인적 채용이나 급여에 관한 협상을 개시한 후 3 업무일 이내에 하원 공적행위기준위원회 또는 상원 윤리특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II. 행정부 – 채용 접촉, 논의 & 협상**

- A. 미국 행정부에 근무하는 정부 직원이 개인적인 “협상”<sup>10</sup> 또는 “구직”<sup>11</sup>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직원은 스스로 향후 고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공무 행위를 거부할 것이 요구된다. 형법

<sup>5</sup>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d)항(1)호, 제 207 조제(c)항제(1)호. 이러한 제한은 대통령, 부통령, 장관, 대통령실 고위 공무원 등의 최고위 행정부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sup>6</sup> “고위 직원”이란 임기 종료 전 1년 동안의 급여가 (2013년 기준) 60일 또는 합계 60일 이상 동안의 급여가 미화 130,500달러 이상이며 매년 1월 1일마다 조정되는 직원을 의미한다.

<sup>7</sup> 또한 상원 규정 제 37호에 따르면, 등록 로비스트가 되거나 등록 로비스트가 채용하거나 등록 로비스트를 보유한 조직이 채용한 전직 직원에 대하여 1년 동안의 냉각기도 부과하고 있다. “고위 직원”은 상원 전반에 걸쳐 접촉이 제한되며, 비고위 직원은 자신의 재직 당시 상원 또는 그 의원실 직원과의 접촉만 제한된다.

<sup>8</sup> 이러한 “3일 규칙”과는 무관하게, 상원의원은 자신의 개인적 채용이 1995년 「로비공개법」에 정의된 “로비 활동”에 관련된 경우, 자신의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채용 협상이 금지된다.

<sup>9</sup> 각주 6 참조

<sup>10</sup> “협상”이란 잠재적인 채용에 관한 협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수행하는 다른 인물 또는 그러한 인물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과의 논의 또는 소통으로 넓게 해석된다. 이 용어는 특정 직위로의 채용의 특정 조건에 관한 논의로만 한정되지 아니한다.

<sup>11</sup> “구직”에는 어떤 인물의 잠재적 채용에 관한 모든 인물 또는 그 인물의 대리인 또는 중개인과의 요청받지 아니한 소통이 포함된다. 이력서 또는 기타 제안서를 직원의 임무 수행 또는 비수행에 직접 영향을 받는 조직 또는 인물에 제출하는 행위는 “구직”에 해당된다. 그러나 다음의 행위는 구직에 해당되지 않는다: (a) 단순히 구직 신청서를 요청하는 행위, (b) 직원의 임무의 수행 또는 비수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조직 또는 인물에게 이력서나 그 밖의 채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 (c) 오직 산업의 일부 또는 구분되는 등급의 일부로서만 직원의 임무 수행 또는 비수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조직 또는 인물에게 이력서 또는 그 밖의 채용 제안서를 제출하는 행위. 그러한 경우, 해당 직원은 채용 논의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응답을 받은 시점(즉, 요청받지 아니한 소통에 대한 향후 고용자로부터 채용 가능성에 관한 거절 이외의 응답을 받은 시점)에 구직을 시작한 것으로 간주된다. 가까운 미래까지

규정(「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8 조)에서는 연방 직원이 미래의 채용을 협상하고 있거나 그러한 약속이 있는 모든 민간 조직이 금전적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한 모든 정부 사안에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 B. 이러한 제한은 직원이 의사결정, 승인, 비승인, 권고, 조언 요구, 조사 등을 통하여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참가하는 사안에 적용된다. “개인적으로(personally)” 참가한다는 것은 직접적인 행위를 의미하며, 사안에서 상급자가 실제로 하급자의 참가를 지시했을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실질적으로(substantially)”란 직원의 관련여부가 해당 사안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
- C. 정부 직원은 향후 고용자가 금전적 이해를 갖는 모든 정부 사안에서 스스로를 배제함으로써 이러한 규정의 위반을 피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배제란 특정 사안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의 상급자에게 서면 통지를 뜻한다. 또한 직원은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8 조제(b)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서면 권리포기서(waiver)를 먼저 획득한 후에, 채용을 위하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고용자가 관련된 특정 사안에 참여할 수 있다. 권리포기서를 신청한 직원은 이해관계 충돌의 성격과 상황에 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윤리 자문관과 조율을 거쳐 향후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취하기 전에 서면 참여 허가서를 획득하여야 한다.
- D. 위에 추가하여, 「조달윤리법」(Procurement Integrity Act), 「미합중국법」 제 41 편제 423 조에서는 대리 조달 업무에 참여한 적이 있는 연방 직원에 대하여 구직을 제한하고 있다. 동법에는 비연방(non-Federal) 채용에 관하여 입찰자 또는 제안자와 접촉하거나 연락을 받는 직원에 대한 통지 및 배제<sup>12</sup> 요건 조항이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조달에 관한 특정 정보의 공개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동법에는 대규모 조달에 참여한 적이 있는 특정 직원을 1 년 동안 특정 민간 고용주가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있다. 「조달윤리법」을 위반한 직원이나 조직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다.

동법은 가액 미화 100,000 달러를 초과하는 대리 조달에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잠재적인 비연방 채용에 관하여 해당 조달에 참여한 입찰자 또는 제안자와 접촉하거나 연락을 받는 직원은, 즉시 서면으로 해당 공무원의 상급자, 그리고 해당 기관의 지정 윤리관(Designated Agency Ethics Official)에게 접촉 내용을 보고하고, 비연방 채용 가능성을 거절하거나 이후에 자신을 조달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제 기간은 해당 기관이 해당 인물이 더 이상 그러한 연방 기관 조달의 입찰자 또는 제안자가 아니거나, 잠재적 비연방 채용에 관한 입찰자 또는 제안자와의 모든 논의가 채용에 관한 합의나 약속 없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이 그러한 조달에 참여를 재개하도록 승인할 때까지로 한다.

동법에서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의 의미는 조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에서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1) 해당 조달의 사양 또는 작업 내역의 기초, 검토, 또는

논의를 연기한다는 응답은 요청받지 아니한 채용 제안에 대한 거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원은 (1) 직원 또는 향후 고용자가 채용 가능성을 거절하였으며, 잠재적인 채용에 관한 모든 논의가 종결된 경우, (2) 직원의 요청받지 아니한 소통으로부터 2 개월이 경과하였으며, 향후 고용자가 응답하지 아니하였거나 그러한 채용에 관심을 표명하지 아니한 경우, 더 이상 구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up>12</sup> 자신을 조달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는 직원은 채용 논의를 개시 또는 그에 참여하기 전에 계약행위 총책임자(head of the contracting activity, HCA) 또는 지정자에게 조달 추가참여 배제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승인, (2) 입찰요청서의 준비 또는 작성, (3) 입찰서류 또는 제안서에 대한 평가 또는 공급자 선정, (4) 계약 가격 또는 약관에 관한 협상, (5) 낙찰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이 포함된다. 실질적인 참여에는 공적 책임, 지식, 의무적 관여, 행정적 또는 부수적 사안에 대한 관여 이상이 요구된다. 특정 사안의 결과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실질적일 수 있다. 실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사안에 쏟은 노력만이 아니라 그 노력의 중요성도 고려한다. 일련의 부수적인 행위가 비실질적일 수 있지만, 한번의 승인 행위나 핵심적인 단계에서의 참여는 실질적인 행위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규제적, 행정적, 예산적 절차와의 부합성을 결정하기 위한 조달 서류의 검토는 조달 과정에서 실질적인 참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한 개인은 다음에 해당된다 하여 조달 과정에서 개인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다고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1) 프로그램 이정표를 검토하거나 대안적 기술 또는 광범위한 기관 수준의 임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접근법에 관련된 평가나 권고를 하기 위한 기관 수준의 위원회, 패널, 기타 자문위원회에 참여, (2) 특정 조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며 적용 범위가 넓은 일반적, 기술적, 공학적 또는 과학적 노력의 수행(단, 그러한 일반적, 기술적, 공학적, 또는 과학적 노력이 이후에 특정 조달에 포함될지의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3) 특정 조달의 수행을 지원하는 사무적 기능, (4) 예산관리국(OMB) 회보(Circular) 제 A-76 호의 절차에 따라 수행될 조달, 관리 연구에 참여, 자체 비용 추정 작성, “최적 조직” 분석 작성, 성능 표준, 작업지시서, 사양서 작성에 타인이 이용할 자료 제공 또는 기술적 지원.

- E. **구직 비용.** 현직 정부 공무원 또는 직원은 선의에 따른 채용 논의에서 관행적으로 향후 고용자가 제공하는 경우, 식사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여행 혜택을 수락할 수 있다. 직원의 임무 수행 또는 비수행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으며 UTC 가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일부 사례에서, 위에서 논의한 배제 요건이 적용될 것이다.
- D. **제대 휴가 중의 업무.** 많은 장교들이 “제대 휴가”(terminal leave), 즉 공식적으로 전역하기 전에 누적된 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경력을 마감한다. UTC 는 그러한 인물을 제대 휴가 중에 채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제대 휴가 중에도 복무 중이기 때문에, 재무상황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는 상급 장교(OGE(Office of Government Ethics, 정부윤리실) 양식 제 450 호 또는 SF 제 278 호)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서면 허가서를 득하여야 한다. 또한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5 조에서는 군대 장교(사병은 아님) 또는 연방 민간인 직원이 연방 법원 또는 기관에서 미국 이외의 조직을 대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3 조는 장교 및 민간인 직원이 “개인적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미국 정부에 대한 대리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수를 “직간접적으로”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들은 군대 장교의 제대 휴가 기간 중에도 적용된다. 군대 장교가 전역한 후에는 그러한 조항들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아니한다.

### III. 전직 정부 직원

- A. 조달윤리법에서는 군인을 포함한 전·현직 미국 공무원이 연방기관 조달 계약을 부여하기 전에 수급자 입찰 또는 제안 정보<sup>13</sup>, 또는 공급자 선정 정보<sup>14</sup>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동법에서는 또한 연방기관 조달 계약을 부여하기 전에 다른 개인이 그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 B. 미국 정부 직원은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8 조에 따라 해당 직원이 정부 직원일 당시 개인적으로 및 실질적으로 관여한 특정 사안(예, 계약, 청구 등)에 관련된 조직을 대리하여 정부와 어떠한 소통도 할 수 없다. 감독자, 고위급 정부 직원, 전직 의회 의원, 전직 의회 의원실 직원, 무역 또는 조약 협상에 참여하였던 직원에게는 추가적인 광범위한 제한이 적용된다. 제한에 따르면 해당 인원을 채용한 부서 또는 기관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한 소통이 금지된다. 이러한 인원의 채용은 금지되지 아니하지만, 이러한 인원은 다양한 기간 동안 특정한 유형의 임무와 소통이 금지되며, 일부 인원은 평생 금지 대상이 된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 C. 「조달윤리법」에서는 전직 정부기관 공무원은 수급자에게 낙찰액이 미화 1 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에 관련된 중요한 직위<sup>15</sup>에서 근무한 후 1 년 이내에 해당 수급자의 직원, 관리자, 지시자, 또는 자문인으로서 수급자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금지된 수급자의 부문(division)이나 계열사(affiliate)가 해당 계약에서 수급자의 단체와 같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지된 수급자의 부문(division)이나 계열사(affiliate)가 지불하는 보수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 D. 「미합중국법」 제 10 편제 2408 조에서는 관리 또는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이사회에서 근무하였거나 자문인으로 근무할 당시, 국방부와의 계약으로 인하여 사기 또는 중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UTC가 유죄판결 일자로부터 5 년 이내에 이를 알고도 채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sup>13</sup> 동법에서는 “수급자 입찰 또는 제안 정보”에 연방기관 조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서 또는 제안서의 일부 또는 그와 관련하여 연방기관에 제출한 다음 정보 중 하나를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단, 과거에 대중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거나 공개된 경우는 제외한다): (1) 비용 또는 단가 자료(「미합중국법」 제 10 편제 2306a 조제(h)항의 해당 조항에 따른 조달 관련 자료, 「미합중국법」 제 41 편제 254b 조제(h)항의 해당 조항에 따른 조달), (2) 간접비 및 직접 노무비, (3) 적용 가능한 법규에 따라 수급자가 표시한 제조 공정, 작업, 기술 등에 관한 재산권을 보유한 정보, (4) 적용 가능한 법규에 따라 수급자가 “수급자 입찰 또는 제안 정보”로 표시한 정보

<sup>14</sup> 동법에서는 “공급자 선정 정보”를 연방기관 조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입찰서 또는 제안서를 평가할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작성된 다음의 정보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단, 해당 정보를 과거에 대중이 이용할 수 없었거나 공개되지 아니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연방기관이 봉인 입찰을 진행하기 위한 입찰요청에 따라 제출된 입찰 가격 또는 공개 개찰 전의 그러한 입찰 가격 목록, (2) 연방기관의 입찰참가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제출된 제안 비용 또는 가격, 또는 그러한 제안 비용 또는 가격 목록, (3) 공급자 선정 계획, (4) 기술 평가 계획, (5) 제안서에 대한 기술적 평가, (6) 제안서에 대한 비용 또는 가격 평가, (7) 계약 부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선정될 기회가 있는 제안서를 식별하고 있는 경쟁 범위 결정서, (8) 입찰서, 제안서, 또는 경쟁자 순위, (9) 공급자 선정 패널, 위원회, 자문위원회의 보고서 및 평가서, (10) 기관장, 기관장의 지명자 또는 계약 공무원이 사례별로 공개할 경우, 정보와 관련된 연방기관 조달의 윤리 또는 성공적 완료를 저해할 수 있을 것으로 표시한 그 밖의 정보

<sup>15</sup> 중요한 직위의 의미는 선정 또는 계약 부여 당시 (1) 낙찰액 미화 1 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위하여 해당 수급자가 선정된 조달에서 조달계약관(PCO), 공급자 선정 당국(또는 공급자 선정 평가위원회 위원) 또는 재무 또는 기술평가팀장으로 근무하였거나 (2) 해당 수급자가 관련된 낙찰액 미화 1 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을 위한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그램 부매니저, 또는 계약행정관(ACO)으로 근무하였거나, (3) 해당 수급자에 대한 낙찰액이 미화 1 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약, 하도급, 개조 또는 과업 또는 인도 명령을 개인적으로 결정하고, 낙찰액 미화 1 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경상비 또는 그 밖의 요율을 수립한 경우, 해당 수급자에게 미화 1 천만달러를 초과하는 계약 또는 지불을 승인하였거나, 해당 수급자에게 낙찰액 미화 1 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지불금 또는 청구금을 지불한 경우를 의미한다. “낙찰액 미화 1 천만달러를 초과하는”의 의미는 (1) 모든 옵션을 포함하여 계약 부여 당시의 가격 또는 추정액, (2) 무기한 인도, 무한 수량 또는 요구 계약에 따른 모든 주문 당시 총 추정 액수, (3) 계약관이 더 낮은 추정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의 모든 다수 공급자 계약, (4) 한도액 계약에 따른 인도 지시, 과업 지시, 또는 지시 가격, (5) 청구에 대하여 지불한 또는 지불될 액수, (6) 적용 가능한 할당 기준의 정부 부분에 적용했을 때의 협상된 경상비 또는 그 밖에 요율의 추정 가격이다.

E.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는 전직 장교 및 민간인 직원(사병이 아님), 일부 예비군 장교 및 특별 정부 직원에게 적용된다.

1. 제 207 조제(a)항제(1)호에서는 전직 공무원 또는 직원이 정부 근무 당시,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한 특정 당사자가 관련된 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타인(미국은 제외)을 대리하여 알면서도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미국의 부서, 기관, 법원 또는 군사법원과 소통하거나 대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는 정부 근무 종료일자에 적용되기 시작하여, 전직 공무원 또는 직원에게 평생 적용된다. 이러한 금지를 둔 목적은 정부가 채용하였을 당시에 어떤 사안에 참여하였던 전직 공무원 또는 직원이, 나중에 같은 사안에서 미국에 대하여 타인을 대리함으로써 “편을 바꾸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동법의 이 조항은 전직 공무원이 민간 고용자에게 “배후에서” 또는 “내부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아니한다. 이러한 금지는 또한 의회 의원 또는 그들의 보좌 직원과의 소통이나 대면에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금지의 위반은 오직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에만 성립된다: (a) 전직 직원이 정부 근무 당시에 특정 사안에 대한 업무를 하였을 것, (b) 전직 직원의 업무 범위가 해당 사안에서의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참여에 상당할 것, (c) 특정 사안에 대한 특정 당사자가 정부 근무 당시에 확인되었을 것, (d) 전직 직원이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동일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인물 또는 실체를 대리하여 연방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과 소통 또는 대면하였을 것

이러한 금지에 포함된 “특정 사안”(particular matter)이란 특정 계약, 신청(application), 명령 요청(request for a ruling) 또는 기타 결정(determination), 법규제정(rulemaking), 청구(claim), 논쟁(controversy), 수사(investigation), 부과(charge), 고발(accusation), 체포(arrest), 또는 사법 소송(judicial proceeding) 또는 기타 소송(other proceeding) 등이 포함된다. 전직 공무원 또는 직원이 참여한 일반적인 정책의 입안 또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타 행위는 결과가 특정 인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도 예측 가능한 영향이 없는 경우, 특정 사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경우, 전직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가 입안을 보조한 정책의 특정한 적용에 관련된 사안에 관련하여 민간 채용자를 대리할 수 있다. 전직 직원이 정부 근무 당시에 참여한 사안과 동일한 특정 사안에 대한 업무를 하지 아니한 한,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두 특정 사안이 동일한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에는, 기본 사실, 동일하거나 관련된 사안, 동일하거나 관련된 당사자, 동일한 비밀 정보에 대한 유사성, 중요한 연방의 이익의 지속적인 존재 여부, 두 사안 사이에 경과된 시간 등이 포함된다.

전직 공무원의 해당 사안에 대한 참여가 “개인적이고 실질적”이지 아니한 경우,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인적이고 실질적인 참여는 “결정, 승인, 비승인, 권고, 조언 요구, 조사, 또는 기타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개인적 참여는 전직 직원의 행위 및 전직 직원이 실제로 지시한 경우, 하급자의 행위를 모두 지칭한다. 실질적인 참여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중요한, 또는

합리적으로 그렇게 간주되는 참여를 의미한다. 어떤 사안에 대한 공식적 책임, 그것에 대한 지식, 또는 행정적 또는 부수적 사안에 대한 의무적인 참여는 실질적 참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정부 근무 당시에 특정 사안에 대한 특정 당사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금지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특정 당사자는 확인된 민간 단체이다. 예를 들면, 계약 제안을 위한 요청서의 초안은 일단 잠재적 수급자가 확인되면, 특정 당사자가 관련된 특정 사안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제 207 조제(a)항제(1)호가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전직 공무원이 정부에서 이직하기 전에 전직 공무원의 채용자가 해당 사안에 대한 당사자로 확인되었을 필요는 없다. 특정 당사자들 중 일부가 확인된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2. 두 번째 제한은 지속기간이 짧다는 점과 어떤 공무원이나 직원이 해당 사안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해당 사안에 개인적으로 및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위에서 논의한 평생 제한과 동일하다.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a)항제(2)호에서는 정부 근무를 종료한 후 2년 동안, 전직 공무원 또는 직원이 정부 근무 마지막 해의 공적 책임에 해당된 특정 당사자가 관련된 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부 공무원과 소통하거나 대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적 책임”(official responsibility)이란 중간적 행사 또는 최종적 행사, 단독 행사 또는 타인과 공동 행사, 직접 행사 또는 하급자를 통한 행사를 막론하고, 정부 행위를 승인, 비승인, 기타 지시할 직접적인 행정 또는 운영 권한”으로 정의된다. “행정 권한”(administrative authority)이란 사안의 부수적 측면을 검토하거나 결정할 권한이 아닌, 사안을 계획, 조직, 또는 통제할 권한을 의미한다. 법규, 규정, 행정 명령, 직무 기술, 권한 위임에 의해 지정된 분야는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공적 책임의 범위를 규정한다. 공직자윤리국 (Office of Government Ethics)은 어떤 기관 내에서 고려 중인 모든 특정 사안들은 모두 기관장의 공적 책임 하에 있으며, 각각은 자신의 임무 범위 안에서 해당 사안에 실제로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 중간 감독자의 책임 하에 있다고 결정하였다. “실제로 임한”(actually pending)이란 해당 사안이 사실 상, 전직 공무원의 책임 분야 내의 인원에게 회부되었거나 그가 고려하였음을 의미하며, 단지 그에게 회부될 수 있었던 사항을 의미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금지는 채용자에 대한 내부 지원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전직 직원은 타인을 대리할 것임을 제안할 당시, 정부 근무 마지막 해에 자신의 공적 책임 하에 있었음을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3. 무역 또는 조약 협상.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b)항에서는 정부 근무를 종료한 후 1년 동안, 전직 공무원 및 직원이 「정보공개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른 공개가 면제되며 자신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에 기초한,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또는 조약 협상에 관하여, 이를 알고서도 채용자 또는 어떠한 단체를 대표하거나 그를 보조하거나 조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정부 근무에서 떠나거나 퇴직할 때부터 적용되며, 위에서 논의한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a)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제한과는 다르게, 전직 공무원이 어떠한 인물이나

단체에게 공개가 금지된 정보를 근거로 하여 “배후에서” 조력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만약 전직 공무원이 정부 근무 마지막 해에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또는 조약 협상에 개인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직 공무원이 무역 또는 조약 협상에 개인적으로 및 실질적으로 참여하였기 위하여, 미국 이외의 당사자와 접촉하였을 필요는 없다. 이 조항이 다루는 조약 협상이란 상원의 조언과 동의가 필요한 국제적 계약이 체결되는 조약이다. 여기에 포함된 무역 협상이란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제 1102조에 따라 대통령이 수행하는 협상을 의미한다. 어떤 협상이 “현재 진행중”(ongoing)이 되는 시점은 (1) 협상 결과가 조약 또는 통상 계약이 될 것임을 관할 당국이 결정하였고, (2) 외국 정부와의 논의가 서면으로 시작된 때이다.

- F. 전직 고위 직원에게 적용 가능한 제한. “전직 고위 직원”(former senior employee)에는 모든 전직 장군 및 장성급 장교(급여 등급 O-7 이상) 및 급여 요율이 명시되었거나 공무원급여표에 고정된 직위, 또는 급여 요율이 공무원급여표의 V 등급에 해당하는 급여 요율 이상인 직위(2014년 기준 미화 147,200 달러)에 채용된 민간인 직원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인들에게는 다음의 추가적인 제한이 적용된다.

1. 전직 부서, 기관, 또는 부문과 1년 동안 소통 금지. 제 207 조제(c)항에 따라, 전직 고위 직원은 만약 그러한 소통 또는 대면이 어떤 사안에 대한 공적 행위를 원하는 어떠한 타인을 대리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알면서도 그러한 직위에 근무한 후 1년 동안,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정부 근무 마지막 해에 근무한 부서, 기관, 지정된 부문 직원과의 소통 또는 대면이 금지된다. 이러한 1년 동안의 제한은, 정부 근무 종료일자와 고위 직원이 더 이상 아니게 된 일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한, 정부 근무 종료일자가 아닌, 즉 더 이상 고위 직원이 아닌 일자부터 계산한다. 위에서 논의한 제 207 조제(a)항제(1)호와 제 207 조제(a)항제(2)호의 제한과 유사하게, 이러한 제한은 정부와의 소통 및 대면을 금지하고 있지만, “배후에서” 지원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지는 몇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볼 때, 위에서 논의한 제한과는 다르다. 즉, (a) 전직 고위 직원은 사전에 사안에 참여하였거나 책임을 부담하였을 필요가 없으며, (b) 포함된 사안이 더 광범위하며, 특정 당사자가 참여하였을 필요가 없고, (c) 전직 고위 직원이 정부 근무 마지막 해에 근무한 부서 또는 기관으로만 한정되며, 정부 전체로 금지가 확대되지 아니한다. 제 207 조제(c)항의 목적상, 국방부는 모체 부서와 다양한 부문으로 나뉜다. 이 때 지정된 국방부 부문은 해군부, 육군부, 공군부, 국방정보시스템국(Defense Information Systems Agency), 국방정보국(Defense Intelligence Agency), 국방군수국(Defense Logistics Agency), 국가영상지도국(National Imagery and Mapping Agency), 국방특수무기국(Defense Special Weapons Agency), 국방장관실(Office of Secretary of



Defense), 국가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이다. 파견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유무에 따라<sup>16</sup>, 이들 부문의 전직 직원은 다른 배치된 부문과의 소통이 금지되지 아니한다.

**주석 1:** 회계연도 2004 「국방수권법(國防授權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미국 공법」 제 108-136 조, 2003 년 11 월 23 일)의 제 1125 조는 2005 년 11 월 24 일에 만료되었다. 동법에는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c)항의 제한을 고위공무원단(SES)의 다른 등급의 구성원에게도 연장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었다. 비록 「국방부 수권법」(Department of Defense Authorization Act)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는 정부 전체에 걸쳐 적용되었다. 비록 만료되었지만, 기본 급여 및 적용 가능한 직책 급여를 합산한 요율이 2004 년 1 월 11 일자로 미화 135,805 달러 이상인 SES 구성원은, 기본 급여 요율이 공무원 II 급(2014 년 기준=미화 156,997.50 달러)의 86.5% 이상인 경우,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c)항이 적용된다.

**주석 2:** 2009 년 1 월 21 일자 행정명령 제 13490 호에서는 모든 행정부 기관에 2009 년 1 월 20 일 및 그 이후에 지명된 모든 “피지명자”(appointee)가 (1) 등록 로비스트 또는 로비 기관으로부터 선물을 받지 아니하며(UTC 정책 4 및 5 참조), (2) 이전 직장, 로비 활동, 과거 고객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관련된 특정 당사자가 관여된 어떠한 특정 사안에 참여하는 것을 지명일로부터 2 년 동안 삼가며, (3) 정부 근무를 떠난 후 2 년이라는 기간 동안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c)항의 제한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며, (4) 오바마 행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포함된 행정부 공무원 또는 직업 공무원이 아닌 SES 피지명자에게 로비하지 아니하겠다는 서면 윤리 협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지명자”란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받아 대통령 또는 부통령이 지명한 인물로서, 직업 공무원이 아닌 SES 피지명자 또는 경쟁 근무직에서 제외된 직위(“별표 C” 정책 입안 및 비밀 직위)를 의미한다.

2. 외국 실체를 대표하는 것에 관한 1 년 동안의 제한. 그러한 제 207 조제(f)항에 따라, 직위에서 근무한 후 1 년 동안, 전직 고위 직원은 미국 정부 공무원 직원의 직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의도를 갖고 고의로 외국 단체를 대표하거나, 조력 또는 조언하는 것이 금지된다. 1 년이라는 제한기간은 정부 근무 종료일자와 고위 직원이 더 이상 아니게 된 일자가 동일하지 아니한 한, 정부 근무 종료일자가 아닌, 즉 더 이상 고위 직원이 아닌 일자부터 계산한다. 본 조항의 목적 상, “외국 단체”에는 외국 정부 및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의 일부에 대하여 주권적 정치 관할권을 행사하는 모든 개인 또는 집단이 포함된다. 이 용어에는 또한 외국 또는 정부에 대한 참여, 설립, 관리, 또는 통제를 추구하거나 이에 참여하는 외국 정당 및 조직 또는 집단도 포함된다. 외국의 상업적 회사는 주권 기능을 행사하지 아니한 한, 일반적으로 제 207 조제(f)항의 목적상 “외국 단체”로 간주되지 아니할 것이다. 전직 고위 직원은 그러한 단체 를 대리하여 대리인(agent) 또는 변호인(attorney)으로

<sup>16</sup>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g)항에 따라, 한 부서에서 다른 부서로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렇게 파견된 기간 중에 두 부서 모두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 근무 마지막 해에 국방장관실(OSD)로 배치된 고위 해군 장교는 제 207 조제(c)항에 따라 해군부 및 국방장관실과의 소통이 금지될 것이다.

행동하거나 정부 부서 또는 기관의 어떠한 직원과 달리 소통 또는 대면하는 경우, 외국 단체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직 고위 직원은 소통 또는 대면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단체를 도운 경우, 외국 단체에 “조력”하거나 “조언”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외국 단체에 대한 그러한 “배후” 지원에는 예를 들면 어떤 기관에 대한 제안된 소통문의 기안, 부서와의 대면에 대한 조언, 부서 또는 기관의 공무원들이 특정 행동을 하도록 설득하기 위한 기타 전략에 관한 자문 등이 있다. 전직 고위 직원의 대표, 조력, 또는 조언은 만약 현직 부서 또는 기관 직원의 공식적인 분별있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실행하였거나 실행을 유도한 경우에만 금지된다. 오로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한 소통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그러한 소통은 영향을 미칠 목적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면제는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b)항, 즉 무역 및 조약 협상에 대한 제한,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f)항, 즉 전직 고위 직원의 외국 단체 대표, 조력, 조언에 대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위에 논의된 소통에 대한 모든 제한에 적용된다. 면제는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j)항제(5)호에 있다.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에 있는 제한은 공식적인 정부 직책을 이행하거나 주(州) 또는 지방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미국을 대리하여 수행한 소통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에 따라, 예를 들면, 퇴역한 지휘관이나 보고하는 고위 공무원은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적용가능한 규정에 따라 전직 하급자에 대한 평가와 적합성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다. 전직 직원은 선서에 따른 증언 또는 위증 시 처벌되는 조건 하에, 필요한 증언을 할 수 있다. 전직 직원은 전문가 의견 증언을 할 수 있으나, 법원의 명령에 따라서만, 또는 증언의 주제 사안에 관련된 대로, 위에서 논의한 대로, 평생 금지(「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a)항)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이러한 제한은 또한 정부가 참여하는 국제기구에 대한 대표, 조력, 조언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단, 국무장관이 그러한 행동이 정부의 이익에 부합됨을 사전에 확인한 경우에 한 한다.

## G. 외국 정부가 통제하는 기관에 의한 채용

1. 비록 UTC 운영 단위에게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지만, 외국 정부가 소유, 운영, 또는 통제하는 상업 기관에 의한 채용은 금지되어 있다. 예를 들면, 계약에 따라 외국 정부에 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미국 회사가 고용한 퇴역 장교는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 정부가 해당 장교를 방출하고 그의 활동을 감독하고 지시할 권한이 있을 경우, 외국 정부가 채용한 것과 같다. 외국 정부와 이해 및 소유관계가 동일한 회사에 의한 채용도 이러한 제한 범위에 포함된다.
2. **외국 에이전트 등록법.** 외국 사업체에서 채용을 원하는 전직 정부 직원(예, 외국 정부가 부분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있는 UTC 단위)은 1938년 「외국에이전트등록법」(the 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에 따라 외국 고용주의 에이전트 등록이 필요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동법에서는 외국 고용주의 에이전트로서의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법무장관에게 등록 성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그러한 등록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공무원(public official)”이 에이전트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을 위반하지 아니하면서 채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별첨 2: 미국 연방정부 직원 “회전문” 설문지**커버 레터

[일자]

[채용 대상자 성명 및 주소]

제목: “회전문” 설문지

수신: \_\_\_\_\_

[UTC 직원으로의 고용 · [개인 서비스 공급자 설명]의 유지] 가능성에 관한 잠재적 논의에 관련하여, 당사는 귀하의 [이력서·지원서]에 귀하가 전·현직 장교 또는 미국 연방정부(이하 “USG”라 한다)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직원이었음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위 “회전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하 “UTC”라 한다)은 전·현직 USG 직원을 신중하게 선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가 채용하는 인원, 채용 시기 및 방법, 전직 USG 직원이 UTC 에서 수행할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UTC 사업 단위가 관련된 연방기관 조달에 개인적 및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을 수 있는 정부 공무원 또는 직원과의 [채용·공급자 신분유지]에 관한 논의에 대한 제한도 있습니다.

동봉된 설문지는 UTC 가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설문지입니다. 각 질문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설문지에 있는 공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첨부자료를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에 답변하기 위한 정보가 없는 경우,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기재가 완료된 설문지를 받기 전까지는 [채용·선임]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수행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설문지에 있는 “UTC”라는 용어는 Otis Elevator Company, Pratt & Whitney, UTC Aerospace Systems, UTC Climate, Controls & Security, United Technologies Research Center 등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 의 모든 부문, 자회사, 통제 하의 관계사가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셔야 합니다.

본 설문지에 관한 질문은 다음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전화번호 [( ) - \_\_\_\_]

설문지

본 설문지의 목적상, “미국 연방정부 직원”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합니다.

- 미국 연방정부의 군대에 등재된 사병
- 미국 연방정부의 군대의 장교
-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부 또는 입법부의 공무원 또는 직원(선출직 또는 임명직, 전일제 또는 시간제, 보수 수령여부 불문)으로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함
  - 특수 정부 직원
  - 연방 자문위원회 위원
  - 선출직 의회 공무원
  - 전·현직 의회 의원
  - 의회 의원의 개인 직원
  - 의회 위원회의 직원
  - 기타 입법부 국실 직원으로,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아니함
    -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 회계감사원(General Accounting Office)
    - 기술평가국(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그러나, 사무직원, 비서, 기타 유사 직급의 직원은 포함되지 아니함

미국 연방정부 채용:

1. 위의 정의에 포함되는 전·현직 **미국 연방정부 직원**입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변한 경우, 2 번 질문으로

“아니오”라고 답변한 경우, 추가로 답변을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에 서명하시고 이 설문지를 UTC 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TC 에 의한 채용 또는 선정 대상자:

2. UTC 직원으로 고용되거나 수급자·공급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십니까?

직원       수급자·공급자

3. 원하시는·예상하시는 직책을 간단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4. 귀하의 UTC 에서의 직무 중에 다음과의 접촉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직원을 포함한 미국 연방정부의 부처, 기관, 법원  
 예  아니오
- 귀하가 채용된 적이 있던 부처, 기관 또는 법원  
 예  아니오
- 외국 단체 또는 외국 단체에 관한 미국 연방정부의 기관 또는 대행기관(“외국 단체”에는 외국 회사, 외국 정부, 또는 외국 정당이 포함됩니다)  
 예  아니오
- 미국 연방정부 직원이었을 당시 개인적으로 및 실질적으로 참여하였던 사안 또는 절차에 관련된 미국 연방정부(행정부, 입법부 또는 사법부)  
 예  아니오
- 기관 또는 의회에서 수행하였으며, 귀하가 감독적 권한 또는 승인권을 행사한 사안 또는 절차에 관련된 미국 연방정부(행정부, 입법부 또는 사법부)  
 예  아니오

위의 질문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한 경우, 관련된 모든 세부내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예상하는 전직 기관 또는 의회 사무실과의 접촉의 성격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정부에 대한 “판매” 또는 마케팅(직접 또는 간접)에 관련된 모든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 향후 채용 또는 선정과 관련하여 UTC 와 최초로 접촉한 일자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6. UTC 내의 연락처는 누구였습니까?

[ ]

7. 접촉의 성격과 그러한 접촉을 시작한 사람에 대하여 간단히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8. 만약 UTC와의 최초 접촉이 귀하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또는 직원이었을 때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접촉 사실을 귀하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만약 “예”라고 답하였으며, 귀하의 상급자에게 접촉을 서면으로 보고하였다면,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만약 UTC 와의 최초 접촉이 귀하가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또는 직원이었을 당시에 이루어졌다면, 배제 통지문을 작성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하였다면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연방정부 채용 이력(행정부 기관 & 의회, 직원 등)

10. 귀하가 미국 연방정부와의 현역 또는 민간인 고용 관계를 종료할(한) 일자를 적어주십시오.

[ ]

11. 종료 일자에 귀하의 군 급여 등급(예, E-4, 0-6), GS 등급(예, GS-13) 또는 공무원급여표 수준은 무엇이었습니까?

[ ]

12. 군대 또는 주(州)방위(National Guard) 예비군 소속이었습니까?

예       아니오

만약 “예”라고 답하였다면, 귀하의 예비군 신분, 예비군 부대에서 수행했던 직무를 상세히 적어 주십시오.

[ ]

13.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 또는 직원(행정부 또는 입법부)에 근무하였을 당시, 현재 및 과거의 직위(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급 또는 등급, 일자, 각 직위에 관한 간단한 설명, 각 직위의 근무 장소를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4. 지난 이(2)년 내에 미국 연방정부 기관의 조달 업무(협상, 평가, 선정, 승인 또는 낙찰, 품질보장, 운용 및 개발 시험, 감사, 계약에 따른 지불 승인, 또는 조달 프로그램 관리 포함)에 참여(검토 또는 승인을

포함)하였거나 미국 연방정부의 대표로서 UTC 의 단위가 관련된 계약, 청구, 합의 협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그러한 행위에 종사한 근무일의 비율 및 UTC 가 관련된 활동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5. 미국 연방정부에 근무할 당시, (언제라도) 귀하가 UTC 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는 서비스에 관련된 사안, UTC 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련된 사안, 또는 UTC 의 직원, 관리, 에이전트 또는 대표자에 관련된 사안에 개인적 및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참여한 일자를 포함하여 모든 세부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6. 지난 해, 또는 귀하가 미국 연방정부에 채용된 마지막 해에 귀하의 공적 책임 하에, UTC 가 관련된 사안이 있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모든 세부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7. 미국 연방정부 직원으로 근무할 당시, 귀하의 업무에는 UTC 와의 접촉이나 사업적 관계가 수반되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접촉의 성격 및 지속시간, 귀하의 미국 연방정부 직무 책임에 대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8. 상급자, 기관 윤리관, 행동기준 자문관, 또는 기타 상응하는 직책에서 근무하는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으로부터 미국 연방정부 채용 이후에 관한 “윤리” 의견을 요청 및/또는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그러한 의견의 사본을 모두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국방부 연방획득규정 보충규정 제 252.203-7005 호에 따라, UTC 는 귀하가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 「미합중국법」 제 41 편제 2101 조~제 2107 조, 「미연방규정집」 제 5 편제 2637 조 및 제 2641 조, 「연방획득규정」 제 3.104-2 조를 준수하고 있음을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 공법」 제 110-181 호의 제 847 조(2008 년 1 월 28 일 발효)에서는 일부 전직 국방부 공무원들이 국방부를 이직한 후 2 년 이내에 국방부 수급자로부터 보수를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용 후 제한의 적용 가능성에 관한 서면 의견을 획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법은 다음과 같은 공무원 또는 전직 공무원에게 적용됩니다: (1) 가액 미화 10,000,000 달러를 초과하며 「연방조달정책실법」 제 4 조제(16)항에 규정된 획득 활동에 개인적 및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미합중국법」 제 5 편제 53 장제 II 절에 따른 봉급표 직위 또는 「미합중국법」 제 5 편제 53 장제 VIII 절에 따른 고위급 공무원 직위에 근무하거나 근무한 공무원 또는 「미합중국법」 제 37 편제 201 장에 따른 등급 O-7 이상의 급여 요율의 보수를 받은 장군 또는 장성급 장교로 근무하거나 근무한 공무원, (2) 가액이 미화 10,000,000 달러를 초과하는 계약의 프로그램 매니저, 프로그램 부매니저, 조달계약장교, 계약행정장교, 공급자 선정 당국, 공급자 선정 평가 위원회 위원, 재무 또는 기술평가팀장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한 공무원. 수급자는 전직 공무원이 그러한 서면 의견을 미리 청하고 수령하지 않았음을 “아는 상황에서는 [위에] 기술된 전직 국방부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19. 귀하는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미국 연방정부 비밀 정보에 관련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필요한 최고 접근 등급은 무엇입니까? \_\_\_\_\_.

귀하는 현재 필요한 비밀취급인가증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비밀취급인가증의 유형, 발급 일자, 그러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타 정보를 상세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귀하는 사기 또는 기타 중범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미국 연방정부와의 사업이 금지 또는 중단되었거나, 미국 연방정부에 의해 UTC 또는 기타 미국 연방정부 수급자를 위한 서비스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선언을 받았거나, 중범죄로 기소 당하였거나, 현재 중범죄 혐의로 이어질 수 있는 수사의 대상 또는 목표입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그러한 소송의 일자와 처분 내용을 포함한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1. 채용 후 활동과 관련하여 귀하의 기관으로부터 요구받은 공지 또는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 지난 해 또는 귀하의 미국 연방정부 채용 마지막 해에 무역 또는 조약 협상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그러한 활동에 관한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3. 귀하가 전·현직 미국 연방정부의 행정부의 피지명자라면, 행정명령 제 13490 호 또는 다른 방식으로 요구되는 대로 윤리 합의서에 서명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답한 경우,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아래에 서명함으로써 본인은 본 설문지에 대한 답변이 정확하고 완전함을 확인합니다.

서명: \_\_\_\_\_

성명: \_\_\_\_\_

주소: \_\_\_\_\_

\_\_\_\_\_

\_\_\_\_\_

일자: \_\_\_\_\_

**별첨 3: 미국 연방정부 직원 확인서**

## 정부근무 후 채용 확인 합의서

본 제안은 귀하가 다음 조건과 제한을 인지하고 준수할 것임을 전제로 합니다.

- (1) 귀하가 현직 예비군·주방위군·군대·연방 민간인 직원으로 근무 중이라면, 나머지 복무 기간 중에 United Technologies Corporation(이하 “UTC”라 한다)의 금전적 이해에 직접적이고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사안에 참여하지 아니할 것이며, 감독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할 것이다. 본 서약서에서 “특정 사안”(particular matter)이란 특정 수사, 적용, 명령 요청, 결정, 법규제정, 계약, 논쟁, 청구, 부과, 고발, 체포 또는 사법 소송 또는 기타 소송을 가리키며, 단순히 UTC 장비를 사용하거나 UTC 인원과 접촉하는 것은 본 회전문 제한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특정 사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귀하의 남은 예비군·주방위군·군대·연방 민간인 근무 중 직책이 변경되어 귀하가 그러한 UTC 사안을 다루어야 할 경우, 귀하는 즉시 연방 고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그러한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참여에서 자신을 배제하여야 하며, 귀하의 UTC 상급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8 조를 참조한다.
- (2) 귀하는 미국 연방 정부에 채용되어 근무하던 당시 개인적, 실질적으로 관여한 어떠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어떠한 공무원 또는 직원과도 어떠한 소통 또는 대면도 영구적으로 금지된다.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a)항제(1)호를 참조한다.
- (3) 귀하는 예비군·주방위군·군대·연방 민간인 근무를 종료한 후 2년 이내에 의도적으로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미국 연방정부 근무 당시 귀하의 공적 책임 하에 있던 특정 사안에 관련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어떠한 장교나 직원과도 소통 또는 대면할 수 없다.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7 조제(a)항제(2)호를 참조한다.
- (4) 만약 귀하가 군대·연방 민간인 근무 중에 제대 휴가 중에 UTC 에서 근무할 경우, 귀하는 제대 휴가 중에 미국에 반하여 어떠한 청구를 제기하거나 미국 연방정부 앞에서 UTC 를 대리하거나, 미국 정부에 대한 대리의 대가로 보수를 수령할 수 없다. 「미합중국법」 제 18 편제 203 조 및 제 205 조를 참조한다.
- (5) 귀하가 UTC 에서 직책을 수행하는 중에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i) 귀하가 예비군·주방위군·군대·연방 민간인 근무 중에 접근하였던 UTC 경쟁사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정보, 또는 (ii) 귀하가 예비군·주방위군·군대·연방 민간인 근무 중에 접근한 정보로서 UTC 가 경쟁사에 비해 경쟁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할 기타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



서명: \_\_\_\_\_

일자: \_\_\_\_\_

성명: \_\_\_\_\_